



# 교육부

수신자 수신자 참조  
(경 유)

제 목 신고자 보호지침 가이드라인 반영 협조 및 홍보자료 홈페이지 게시 요청

1. 관련 : 국민권익위원회 보호보상과-509 (2015.04.14.)  
국민권익위원회 보호보상과-2041(2017.12.18.)
  2. 권익위에서는 「부패방지권익위법」 개정에 따라 부패신고자에 대한 보호·보상 안내 강화를 위해 각 기관에 보호·보상 제도안내 규정을 마련하도록 우리부에 협조를 요청하였기에 알려드리니 각 기관에서는 권익위가 배포한 ‘신고자 보호지침 가이드라인’(붙임1) 내용이 2018년 중에 귀 기관 자체 내부 지침·규정 등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※ 신고자 보호·보상 안내 규정 개정 여부는 권익위 주관 ‘18년 공공기관 부패방지 시책평가에 반영 예정

	<b>&lt;가이드라인 수정사항&gt;</b>	
	제7조의2(보호·보상제도 안내) 추가 -신고접수 및 처리결과 통보 시 부패신고자 보호·보상제도 운영 안내문 통지 * 별지 서식(부패신고자 보호·보상제도 운영 안내문) 추가	

3. 아울러 「부패방지권익위법」 개정에 따른 부패신고자 보호·보상제도 안내 홍보 자료도 같이 송부하오니(붙임2), 각 기관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	<b>&lt;개정사항&gt;</b>	
	신고자 비밀보장 범위 확대(법 제64조 및 제88조 관련, ‘18.2.1 시행) -누구든지 부패신고자의 동의 없이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할 수 없음 -위반 시 형사처벌(3년 이하의 징역, 3천만원 이하의 벌금) 및 징계요구	

- 붙임: 1. 각급 기관 신고자 보호지침 제정 관련 가이드라인(수정본) 1부  
2. 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안내 리플렛 1부. 끝.

## 교육부장관



소속기관, 고등교육기관전체, 국립초중고등학교, 국립대학법인, 대학법인, 대학원대학법인, 사이버대학법인, 전문대학법인

주무관	김지연	서기관	엄진섭	민원조사 담당관	전결 12/27 임용빈
-----	-----	-----	-----	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

협조자

수신	담당	팀장	실장
----	----	----	----

시행 민원조사담당관-8371 ( 2017-12-27 ) 접수 ( )  
 우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.,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 / www.moe.go.kr  
 부 (어진동)  
 전화 044-203-6442 전송 044-203-6093 / zzoajy@korea.kr / 비공개